

펫플래닛 안전보상 프로그램 약관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규정)	제2조 (정의규정) <u>⑥ "산책 매니징 서비스"라 함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기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산책 업무와 무료로 산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료 급여 등의 기타 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u>
제2조 (정의규정)	제2조 (정의규정) <u>⑦ "파트너"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펫플래닛을 통해 의뢰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u>
제2조 (정의규정) ⑧~⑬	제2조 (정의규정) ⑧~⑬ ^{⑧ "의뢰인"이라 함은 펫플래닛을 통해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⑨ "의뢰계약"이라 함은 의뢰인이 펫플래닛을 통해 산책 매니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파트너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⑩~⑬ (동일)}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제3조 (약관의 성격 및 효력) <u>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펫플래닛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한 펫플래닛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⑤ (약관 변경 및 개정 관련 규정)</u>
제4조 (약관 외 준칙)	<삭제> <u>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u>
제5조 (안전보상서비스)	제4조 (안전보상서비스)
제6조→제5조 (적용대상)	제5조 (적용대상) <u>① 안전보상서비스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u>

현 행	개 정 안
계약의 산책 매니징 서비스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이하 "대상 반려동물"이라 합니다)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 실종된 경우(이하 통틀어 "부상"이라 합니다) 그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계약의 위탁 펫시터 서비스 대상이 되는 반려견(이하 "대상 반려견"이라 합니다)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 실종된 경우(이하 통틀어 "부상"이라 합니다) 그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6조 (적용대상) ② 안전보상서비스는 성견(2세 내지 7세)인 대상 반려동물에만 적용됩니다.	제5조 (적용대상) ② 안전보상서비스는 성견(생후 12개월 내지 만10세(120개월))인 대상 반려견에만 적용됩니다.
제6조 (적용대상) ⑤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은 안전보상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적용대상) ⑤ 위탁 펫시터 또는 의뢰인의 제8조 제1항 제22호 각 목으로 인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은 안전보상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 (보상금액) ①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의뢰인에게 대상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검사비: 최대 1회, 20만 원까지 지원 2. 치료비: 최대 2회, 1회당 20만 원까지 지원 3. 입원비: 최대 1회, 10만 원까지 지원 4. 장례비: 최대 1회, 30만 원까지 지원	제7조 (보상금액) ①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발생한 사고(중대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대해 의뢰인에게 대상 반려견의 치료비 등으로 위탁 펫시터의 최소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총 피해금액의 40%, 최대 230만원을 지원합니다. 1. 검사비: 최대 1회, 1회당 30만 원까지 지원 2. 치료비: 최대 3회, 1회당 50만 원까지 지원(수술비 포함) 3. 입원비: 최대 2회, 1회당 10만 원까지 지원 4. 장례비: 최대 1회, 30만 원까지 지원
제9조 (적용예외) 제1항 제2호~제3호 2. 대상 반려동물이 생후 2년 미만 또는 8년 이상인 경우 3. 파트너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8조 (적용예외) 제1항 제2호~제3호 2. 대상 반려견이 생후 12개월 미만 또는 10년(120개월) 이상인 경우 3.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9조 (적용예외) 제1항 제16호 16. 수술비용	<삭제>
제9조 (적용예외) 제1항 제22호 <해당 없음>	제8조 (적용예외) 제1항 제22호 <신설> 22. 위탁 펫시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고의 유기/상해/사망) 나. 음주/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

현 행	개 정 안
	<p>다. 산책 시 안전조치 미이행</p> <p>라. 산책용품 체결/고정 미확인으로 탈출사고 발생</p> <p>마. 의뢰인 합의 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제공</p> <p>바. 치명적 이물질 섭취</p> <p>사. 직거래로 발생한 사고</p> <p>아. 제3자에게 위해 가함</p> <p>자. 돌봄공간 안전조치 소홀로 탈출/실종/추락</p> <p>차. 반려견 떨어뜨림/낙상</p> <p>카. 무단 돌봄공간 변경 중 사고 발생</p> <p>타. 1시간 이상 무단 부재 중 사고 발생</p> <p>파. 수의사법 위반 또는 무단 도그 피트니스 진행</p>
제10조 (위탁 펫시터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	제9조 (위탁 펫시터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
①파트너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는 파트너가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대상 반려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① 위탁 펫시터에 대한 안전보상서비스는 위탁 펫시터가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대상 반려견에 의해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2조 (보상금액)	<p>제11조 (보상금액)</p> <p>① 회사는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파트너에게 파트너의 치료비로 최대 1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p> <p>단, 예방 목적의 파상풍 주사비용 및 미용 또는 흉터 제거 목적의 치료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p>
제13조 (인도의무 불이행 시 보상)	<p>제12조 (인도의무 불이행 시 보상)</p> <p>① 의뢰인이 의뢰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상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사유로 파트너가 1주일간 대상 반려동물을 보호한 경우 이용대금은 1차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의뢰인이 이를 2주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이용대금 상당의 보상금을 파트너에게 지원합니다.</p> <p>②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을 유기견보호소로 이전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파트너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p> <p>② 의뢰인은 위약벌을 위탁 펫시터에게 지급해야 하며, 2주일 내 미지급 시 회사가 인도/이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위탁 펫시터에게 위약벌 상당의 보상금을 지원합니다.</p>
제14조 (법률 컨설팅 비용)	제13조 (법률 컨설팅 비용)

현 행	개 정 안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파트너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인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의 요청에 의해 법률 컨설팅 비용을 최대 1회(1시간) 지원합니다.	펫플래닛을 통해 체결된 의뢰계약 이행 중 위탁 펫시터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인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위탁 펫시터의 요청에 의해 법률 컨설팅 비용을 최대 1회(1시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약관,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펫플래닛 파트너 중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약관,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펫플래닛 위탁 펫시터 중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철회 및 취소) ①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하기 전이나 이후라도 제6조, 제7조 또는 제9조에 의해 안전보상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8조에 의한 보상금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 정당하게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철회 및 취소) ① 회사는 안전보상서비스 제공을 확정하기 전이나 이후라도 제4조, 제5조 또는 제7조에 의해 안전보상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6조에 의한 보상금액이 잘못 책정된 경우 정당하게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